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03
----------	------

제출연월일 : 2017. 0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2017. 6. 3.)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로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시림 등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 및 위원회 구성(안 제3조·제4조)
- 다. 도시림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가로수 식재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23조까지)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9조

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7년 06월 21일 ~ 07월 05일(15일간)

나. 의견내용 :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협의결과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공원녹지과 도시녹지팀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樹木)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다.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6미터이상)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4. “녹지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제외하고 도로변에 가로경관 향상과 녹지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5.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해 왕복차도 사이에 설치하는 분리대로 차도를 따라서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6. “수벽(樹壁)”이란 보·차도 경계석으로 구분된 보행자 공간 쪽에 설치한 공간에 잔디나 나무 등 조경 수목을 심은 것을 말한다.

7. “바뀌 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8. “메워 심기”란 같은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

9.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날씨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10.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11.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건널목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12. “부담금”이란 훼손된 가로수(녹지대, 중앙분리대, 수벽 등 포함) 및 관리 시설물 등의 복구에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과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하여 심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림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등의 조성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림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도시림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시림등 조성 시에는 키 큰 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3장 가로수 식재

제7조(가로수의 수종)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심는다.

1.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심을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 넓이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제9조(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1. 교목(키 큰 나무)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성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을 맞추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 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균식·혼식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심을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2. 관목(키 작은 나무)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균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지피류(地被: 땅을 덮고 있는 잡초)를 다층구조로 심을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 때문에 가로수 심기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 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제10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1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시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면 시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12조(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가지치기) ①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제9조에 준한다.

②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아래에 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병해충의 방제) 가로수 병해충 방제요령은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10조에 준한다.

제15조(지형과 토양보호) ① 시장은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에 대해서는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성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계획지 및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되고 척박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고품으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고품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植樹帶: 가로수를 심으려고 길거리나 광장 따위에 마련한 터전)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뀌 심기를 필요로 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 심기 또는 신규 식재수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때 또는 식재·메워 심기·바꾸 심기 등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제17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시행)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또는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와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자에게 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 탓에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훼손한 사람이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은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받아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산출한다.

제19조(부담금의 징수)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훼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한 사람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21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 ③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주민이 직접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면 시장은 별표 5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가로수 관리대장)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로수에 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를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로 한다.

부서명		공원녹지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공원녹지과장 조재훈
	팀장 직위·성명	푸른도시팀장 김선두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선두 (790-5453)

[별표 1]

원인자 부담금

<p>△ 피 해 발 생 의 경 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 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10퍼센트 + 실작업비
<p>△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제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2]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

훼손자 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10만원 미만	20,000원	1)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2) 보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10만원 ~ 50만원 미만	40,000원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000원	
100만원 이상	70,000원	

[별표 3]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장비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장비 및 물품	
4.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별지 제1호서식]

1.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납부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하남시장 귀하</p>							
<p>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p>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60호, 2016.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사항)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림등의 추진체계 정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로수 조성·관리) ①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삭제 <2008.6.20.>

③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4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다만,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로수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중앙분리대,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5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①교목(키큰나무)

1.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은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②관목(키작은나무)

1.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균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③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로수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8조(바뀌심기와 메워심기)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7호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제9조(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병해충 방제) 병해충 방제를 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제15조(관리대장) 규칙 제24조 제4호의 가로수관리대장은 별표 6에 따라 작성한다.

제16조(주민참여 등) ①가로수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가로수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가로수관리청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③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가로수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16.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 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 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 자뿔어붙이기공사 등 특수 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